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1 선고 2019가합6083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종중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정규련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2021. 6. 10.

판결 선고2021. 7. 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/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4. 2.

20. 접수 제2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
나.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/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4. 2.

20. 접수 제25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
다.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5. 6.

18. 접수 제9172호로 마친, 피고 E, 피고 F, 피고 G는 같은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같은

등기소 2014. 2. 20. 접수 제25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재판장판사송인경

판사차유나

판사오정민

별지